

행정쟁송법 요론

제2판 정오표

(2023년 07월 10일 기준)

※ 본 정오표는 2022년 9월 28일 발행된 “행정쟁송법 요론” 제2판 1쇄에 대한 내용입니다.

행정쟁송법 요론 제2판 - 정오표

내용 추가 및 오류 수정 (2023년 07월 10일 기준)

2022년 09월 28일 발행된 행정쟁송법 요론 제2판에서 추가된(보완) 내용과 수정사항 등을 정리한 정오표를 게재합니다. 수정 및 추가된 부분은 위치란에 표기해 두었습니다.

위치	목차	줄수	수정사항
p. 4	박스 조문	2	① 항고소송 : 행정청의 처분등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 (삭제)
	1.1.	2	(행소법 § 3①1호) → (행소법 § 3제1호)
p. 6	3.	3	행정심판법 제3조 → 행정심판법 제3조(현행 5조)
p. 54	tip		① (→ 공법상 계약의 이행) (삭제) ② 공중보건의사의 채용계약해지의 <u>의사표시는 대등한 당사자간의 소송형식인 당사자 소송</u> 으로 그 의사표시의 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는 것이다. (→ 공법상 계약의 이행)
p. 78	9.(2)	2	혼인신고 → 출생신고
p. 83	(6) 3)	1	유지하게 → 유리하게
p. 120	2) 다.	6	법적 불이익이 → 법적 이익이
p. 229	(2)	4	행정시판 → 행정심판